

# IMO 제83차 해사안전위원회(MSC) 참석결과 보고

## I. 일반사항

- 회 의 명 : IMO 제83차 해사안전위원회  
(83th Session of Maritime  
Committee)
- 기간/장소 : 2007. 10. 3 ~ 10. 12 (10일간)  
Bella Center, Copenhagen,  
DENMARK
- 참 석 자 : 연구기획팀 선임검사원 유영중

## II. 의제 목차

1. 의제의 채택, 신입장에 대한 보고
2. IMO 타 기구의 결정사항
3.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
4.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조치
5. 신개념 선박구조기준(GBS)
6. LRIT 관련 사항
7. 위험물,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 
결과
8. 방화 전문위원회 결과
9.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 결과
10.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 결과
11. 선박복원성, 만재흡수선 및 어선 전문위원  
회 결과

12. 선원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결과
13. 무선통신 및 수색·구조 전문위원회 결과
14. 항해안전 전문위원회 결과
15.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 결과
16. 인적요인의 역할
17. 해상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술지원 하위프  
로그램
18. 협약 제·개정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
19.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
20. 일반화물선의 안전
21. 공식 안전성 평가 (FSA)
22. 협약의 이행 및 관련사항
23. 타기구와의 관계
24. 위원회 지침의 적용
25. 작업계획
26. 2008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

## III.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

의제 1	의제의 채택 및 작업반 구성
------	-----------------

- MSC 83/1, MSC 83/1/1로 제출된 의제를 이  
의 없이 채택함
- 회의 진행은 3개 작업반과 1개 초안 작업반  
을 운영함

- W.G 1 : 해상보안강화
- W.G 2 : 목적기반신조선건조기준 GBS
- W.G 3 : LRIT 관련 사항
- D.G 1 : 강제협약 개정
- 주요회의 내용 및 결과는 아래의 해당 의제 결과 참조

**의제 2 IMO 타 기구의 결정사항**

- NAV 82(2006. 10.) 이후 IMO 타 기구에서 결정된 사항 중 MSC 83 관련 내용을 보고
- MSC와 관련된 TC 57, C 98, FAL 34, MEPC 56, 난파물 제거에 대한 국제회의 (2007.5)의 결과들에 대하여 금번회기 중 예정된 각 의제에서 함께 처리함

**의제 3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**

- 1974 SOLAS 개정(Res. MSC. 239(83)): 2009. 1. 1일 accept 되고 “2009년 7월 1일” 발효
  - Chapter IV 개정
    - Reg. 4-1 신설 : GMDSS 위성제공자에 대한 평가기준, 절차, 계획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기능 명시함
- 1974 SOLAS 1988 의정서 개정
  - Appendix 개정(Res. MSC. 240(83)) : 2009. 1. 1일 accept 되고 “2009년 7월 1일” 발효
    - 협약 부록의 각종 증서서식 개정 : (여객선

- 안전증서 등 총6종)
- 현존선의 경우 예전방식인 C1, C2, C3표 시로 할 수 있도록 증서서식을 개정함
- 기타 사항
  - MSC.1/Circ.1234 승인 : 밀폐 자동차 구역 및 개-ro 구역 및 여객선 및 화물선의 특수분류 구역의 소방수의 배출 관련 로로 갑판의 배수설비 관련 SOLAS II-1/3-1 및 II-2/20.6 규칙 개정

- INF Code 개정 (Res. MSC. 241(83)) : 2009. 1. 1일 accept 되고 “2009년 7월 1일” 발효
  - 길이 80미터 미만 선박의 경우 80미터에 서의 구획지수를 적용토록 손상복원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함

**의제 4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**

- 선원에 대한 보안관련 교육 및 친숙화 교육에 관한 지침을 MSC.1/Circ.1235로 채택함
-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
  - 선박방문시 방문자의 신분증 제시를 규정하고 있는 IMO문서가 이미 다수 존재하므로 더 이상의 IMO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음
  - PSCO, 도선사, 기타 공무원의 선박 방문시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을 MSC 83 차 회의 결과에 포함시킬 것
- 협약 비적용 선박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 관련
  - AIS 설치 대상 선박중 AIS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잘못 셋팅된 AIS를 탑재한 선박의

- 세부사항을 IMO에 보고토록 하고 동 자료를 공포
- 협약 비적용 선박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지침서를 통신작업반에 준비토록함

**의제 5    신개념 선박구조기준(GBS)**

-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적용할 GBS 제정 및 GBS 3단계 “검증 절차” 제정 작업
  - 선체 외판 두께 결정 방식에 대하여는 아국 및 IACS가 제시한 안이 지지를 받음
  -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적용할 GBS 제정작업을 MSC 85차(08년 10월)까지 연기하여 MSC 85차에서 집중 논의하여 완성하기로 함
  - GBS 2단계 기능요건 안에 구조성능 감시요건(Structure performance monitoring)의 신설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운항중 성능 감시와도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므로 일단 GBS 3단계 검증절차의 한 부분으로서만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GBS 작업계획에서 고려하기로 함
  - GBS 3단계 “검증 절차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07년도 MSC 82차 전에 했던 IACS CSR을 이용한 GBS 3단계 검증절차의 1차 시험적용을 한번 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8년도에 2차 시험적용을 다시 하기로 함
  - 기간 : 2007년 11월~2008년 8월
  - 목적 : IACS CSR을 이용한 GBS 3단계 검증절차 2차 초안 마련
  - 참석자 : 1차 시험적용에 참석했던 전문가가 고사하지 않는 한 계속 참석

- SLA(안전수준접근방법) 기반의 GBS 제정 작업
  - 현재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적용할 GBS와 SLA(안전수준접근방법) 기반의 GBS 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함
  - SLA 기반의 GBS 개발을 통신작업반 및 MSC 84차(08년 5월)회의에서 계속 작업하기로 함
  - 덴마크가 제안한 선원의 건강과 안전의 고려사항을 GBS에 반영하기로 하여 GBS 2단계 인적요소(Human Element) 기능요건에 반영하고 Pilot Panel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결정함
  - GBS 완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적용할 GBS와 SLA 기반의 GBS를 통일한 GBS를 완성하기 위한 GBS 통신작업반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의 작업지침서를 마련함
    -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GBS 기초 안을 마련할 것
    -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GBS 및 IMO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차이점을 식별할 것
    - 차이점을 극복할 방법을 개발하고 현재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적용할 GBS와 전 선종 선박의 전 분야에 적용할 SLA(안전수준 접근 방법) GBS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일된 안을 마련할 것
  -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적용할 GBS의 성과 전 선종 선박의 전 분야에 적용할 SLA(안전수준 접근 방법) GBS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계획도 마련함

- MSC83(2007년 10월)~MSC84(2008년 5월)회기 중간: GBS 장기 계획 수행을 위한 GBS 통신작업반 활동, Pilot Panel의 GBS 3단계 검증 절차 2차 시험 적용
- MSC84(2008년 5월): GBS 제정 작업 계속(SLA GBS 작업 치중), GBS 장기 계획의 GBS 통일안 작업
- MSC84(2008년 5월)~MSC85(2008년 10월)회기 중간: GBS 장기 계획 수행을 위한 GBS 통신작업반 활동, Pilot Panel의 GBS 3단계 검증 절차 2차 시험 적용
- MSC85(2008년 10월):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적용할 GBS의 완성,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적용할 GBS의 SOLAS 개정안 승인
- MSC85(2008년 10월)~MSC86(2009년 10월)회기 중간: GBS 장기 계획 수행을 위한 GBS 통신작업반 활동
- MSC86(2009년 10월):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적용할 GBS의 SOLAS 개정안 및 관련 규정 채택, 통일 GBS 제정 작업
- MSC 86차(09년 10월)부터는 장기 작업계획서에 따라 통합된 GBS 개발에 집중하기로 함

**의제 6    장거리 선박위치 추적제도(LRIT)**

**□ LRIT 연기 관련**

- 이란은 LRIT 관련 주요 쟁점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행시기를 2010으로 연기할 것을 주장
- 사무국은 LRIT 관련 SOLAS 협약 개정안

이 이미 채택 수락되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SOLAS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설명함

- 대다수 국가가 시행시기 연기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시행시기 연기 제안은 승인되지 못함

**□ LRIT 정보의 사용 범위 확대**

- 포르투갈은 LRIT 정보를 항해안전 및 환경보호 분야까지 확대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
- 대다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지를 표하였으나 파나마는 유엔해양법과의 관계를, 칠레는 MEPC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을 표명함
- MEPC가 동 결과를 주목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MEPC 의장과의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항해안전 및 환경보호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MSC.242(83)으로 채택함

**□ 선박 수리중 LRIT 장치 작동 관련**

- 그리스는 선박이 입거 수리중 LRIT장치의 스위치를 끌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
- 다수의 국가가 동 제안을 지지하여 MSC Circ.에 포함시켰으며 입거 수리 등의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서 사용을 중단하거나 보고 주기를 1일 1회로 낮추는 것을 허용함

**□ IDC/IDE 운영기관 관련**

- 이란은 IDC/IDE를 사기업이 아닌 국제적 기구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
- 그러나 협약 및 성능기준을 만족한다면 반

드시 국제기구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음에 대다수 국가가 찬성함

**의제 7 위험물,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결과**

- 방사성물질(IMDG코드 Class 7 물질) 선적 관련
  - 의료 용도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(IMDG코드 Class 7 물질)의 선적 거부 및 선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송서류에 그 용도를 명기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였음을 주목하고 FAL에서 운송서류의 개정양식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내년 MSC 84에서 검토하도록 함

**의제 8 방화전문위원회 결과**

- 방화전문위원회 결과로서 승인요청된 사항 관련
  - 기관실 및 화물펌프실을 위한 물을 사용하는 소화장치와 동등한 소화장치의 승인을 위한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MSC.1/Circ. 1237로 승인함
  - 신조 및 현존 여객선에 대한 탈출 분석 지침을 MSC.1/Cic. 1238로 승인함
  - SOLAS Chap. II-2에 대한 통일 해석에 대하여 MSC.1/Cic. 1239로 승인함
  - FSS Code에 대한 통일 해석에 대하여 MSC.1/Cic. 1240으로 승인함
  - IBC Code에 대한 통일 해석에 대하여 MSC.1/Cic. 1241로 승인함

- 유조선 및 케미칼 탱커의 안전
  - 동 건을 FP의 새로운 작업으로 지정하며, BLG 및 DE가 협조토록하고 신조선에 대한 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BLG 및 DE에서 현존선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도록 결정함 (DE 결정사항 참조)
- 여객실 발코니에 대한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
  - 지침을 MSC.1/Cic. 1242로 승인함. 또한, 2008. 7. 1 이전의 조기 시행은 기국의 재량에 따르도록 함

**의제 9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 결과**

-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 결과 관련
  - 강화된 검사 관련 Res.A.744(18)의 개정 범위를 확대시켜 IACS 통일해석(UR Z.10 시리즈)을 포함하고 ESP 지침의 통일을 위한 작업을 MSC 의제 25의 작업으로 승인함
  - Void spaces 보호도장 성능기준 관련
    - 현재 Draft 규정에 의한 완전밀폐구역로의 설계/건조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수정을 제안하였고 최종 조정/결정은 차기 MSC 84차에서 마무리하기로 함
    - Void Space의 도장횟수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근소한 차이(28:22)로 아국이 주장한 1회 도장으로 최종 결정되었음. Res.244 (83)으로 채택
  - 승하선 수단(현측사다리) 요건 신설 관련
    - 위원회는 현측사다리의 제작 수리 검사지침을 MSC Circ.로 승인하여 MSC 84에서

채택하기로 함

- 비상예인절차 요건 신설(II-1장 3-4규칙 2항)
  - 재화중량 20,000톤 이상 탱커선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1항으로 이동하고 현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비상예인절차를 비치하도록 SOLAS Reg.II-1/3-4규칙 개정 초안 승인 요청과, 본선 비상예인절차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도록 선주/운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(선박평가절차, 비상예인책자 작성, 비상예인절차 작성 등)을 규정한 지침 초안을 MSC Circ.로 승인하여 MSC 84에서 채택하기로 함
- SOLAS Chap. III에 대한 통일해석을 MSC.1/Circ.1243으로 승인함
- 유아용 구명동의의 표식 MSC.1/Circ.1244로 승인함
- 산적화물선의 정의 관련하여 동 건을 DE의 별도 작업의제로 선정하여 검토할 수 있게 DE 51의 별도 작업의제로 지정함

**의제 10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 결과**

- 가스연료선박 기준 개발
  - 가스연료선박(gas-fuelled ship)에 대한 요건 개발 관련하여 LG 11에서 관련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BLG의 업무가 과다한 점을 고려하여 2009년까지 작업하도록 함
  - IACS GC11 통일 해석을 승인함
- 화물탱크로의 화염침입 방지 장치
  - 화물탱크의 화염침입방지장치에 관한 FP

- 51과 BLG11의 상반된 결정사항에 관한 검토
  - 덴마크는 FP 전문위원회와 BLG 전문위원회가 동 안전에 대하여 상이한 결론을 내린 점과 BLG 11의 결론이 다른 국제규격의 요건과 상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고할 것을 요청함
  - CESA는 0.9mm 이하의 최대실험안전간격(MESG)을 가진 화물에 대하여 인증된 화물탱크로 화염의 침입을 막는 장치의 시험에 관한 BLG 11 및 FP 51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BLG의 검토에 따라 적용할 것을 주장함
  - BLG에 상기 덴마크 및 CESA 안을 송부하여 검토하고 FP안에 대하여 타협안을 작성하여 MSC 84에 제출하기로 함

**의제 11 선박복원성, 만재흡수선 및 어선 안전 전문위원회 결과**

- 복원성, 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
  - 선장을 위한 손상제어도 및 정보 작성지침 승인
    - 개정된 SOLAS II-1(2009년 1월 1일 발효)은 손상이 발생할 경우,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도록 선장이 간단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상제어도 및 정보 작성지침을 MSC.1/ Circ 1245로 승인함
  - 비손상복원성코드의 개정
    - 2008. 비손상복원성코드(2008 IS Code)의 개정안을 MSC Resolution으로 승인하



- 여 MSC 85에서 채택하기로 함
- 또한, 상기 개정 2008 IS Code를 강제화 하기위한 1974 SOLAS 및 1988 LL Protocol 개정안을 승인하여 MSC 85에서 채택하기로 함
- 주요 변경 및 개조에 대한 해석을 MSC.1/Circ 1246으로 승인함

**의제 12 | 선원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결과**

- 선원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결과
- STCW A-I/7에 따라 MSC에서 승인한 적임자 목록에 당사국에서 지명한 자를 포함하여 MSC Circ. 797/Rev. 15로 목록을 발행하기로 함
- STCW Reg. I/8, para.2에 따른 사무총장의 보고서의 준비요건에 따라 마련된 STCW 협약당사국의 독립적 평가에 대한 정보의 전달(MSC.1/1164/Rev.2)에 대한 개정을 승인하고 이를 MSC.1/Circ.1164/Rev.3로 발행토록 함

**의제 13 | 무선통신 및 수색·구조 전문위원회 결과**

- 무선통신, 수색 및 구조 전문위원회 결과
- 수색구조의 용도로 사용할 AIS-SART 성능 기준을 MSC. 246(83)으로 채택
- 수색구조 트랜스폰더(SART, Resolution A.802(19)) 성능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MSC. 247(83)으로 채택
- 세계항행정보 제공에 관한 결의서(A.706(17))

- 의 개정안을 MSC.1/Circ.1247로 승인
- 조난경보에 대한 수색구조의 지연 최소화를 위한 지침서를 MSC.1/Circ.1248로 승인
- 국제항공해상수색구조(IAMSAR) 매뉴얼 수정을 MSC.1/Circ.1249로 승인
- MSC 84에서 채택 예정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
  - SOLAS III/6.2.2, III/26.2.5, 그리고 IV/7.1.3 규칙의 개정 초안 승인.
  - SOLAS 88 Protocol의 개정 초안 승인
  - 1994 국제고속선 코드의 순차 개정안 승인
  - 2000 국제고속선 코드의 순차 개정안 승인

**의제 14 | 항해안전 전문위원회 결과**

- 항해안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
- 본 의제로 제출된 문서는 NAV 54의 결정 사항에 대한 승인요청문서 한 건으로 각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이 모두 승인하였음
  - 비상시 선박 통제에 관한 지침서에 관한 MSC 회람문서 초안을 승인
  - 레이더장비 보호를 위한 안전거리에 관한 MSC 회람문서 초안을 승인
  - INS, IBS 및 선박설계에 SOLAS V/15의 적용을 위한 안전항해 회람문서(SN Circ.) 초안을 승인
- 특별민감구역(PSSA) Papahānaumoku-uākea 국립해상기념물에 대한 새로운 통항 선박보고제도를 MSC. 248(83)으로 채택함
- "Gdansk Gulf" 를 통한 폴란드 항구의 항행시 새로운 강제 통항보고제도를 MSC.

- 249(83)으로 채택함
- "아이슬란드 남서연안" 새로운 강제 통항 보고제도를 MSC. 250(83)으로 채택
- Ushant, Les Casquets 및 Strait/Pas de Calais의 현행 통항보고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MSC. 251(83)으로 채택
- 통합항행시스템(Integrated Navigation System)에 대한 성능기준을 MSC. 252(83)으로 채택
- 항해등, 항해등 조정반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성능 기준을 MSC. 253(83)으로 채택
- 레이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이격 거리에 관한 지침서를 MSC.1/Circ. 1250으로 승인
- 비상시 선박 조정에 대한 지침을 MSC.1/Circ. 1251으로 승인함.
- 다음의 Circular를 채택 또는 승인함.
  - COREG.2/Circ.59 : 통항분리제도의 제개정
  - SN.1/Circ. 263 : 통항분리제도 이외의 항로장치
  - SN.1/Circ. 264 : 강제 선박 보고제도
  - SN.1/Circ. 265 : INS, IBS 및 브리지 설계에 대한 SOLAS V/15의 적용지침
  - SN.1/Circ. 207/Rev.1 : RCDS 및 ECDIS 간의 차이점
  - SN.1/Circ. 266 : 전자해도 디스플레이 및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수유지

의제 15	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 결과
-------	-----------------

-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 결과
  - MSC 82에서 FSI 15에 대하여 차기 FSI 16

- 에서 ISM 코드 및 주관청의 ISM Code 시행에 대한 지침의 개정작업을 MSC/MEPC 합동작업반(JWG)을 구성하여 작업하기로 함
- 해양사고 관련사항의 안전한 조사를 위한 국제 기준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코드의 초안에 대하여 동 Code의 Chap 12, Paragraph 12.2는 "증거가 확보된 해상근무자에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제공 및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"로 개정할 것을 승인하고, 동 사항을 Legal committee에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함
- 선박의 상가검사를 5년에 2회, 그 간격은 최대 36개월 초과 못함에서 특별한 경우 RO-RO 여객선(Cruise)은 5년에 1회 할 수 있도록 Res.948(23)에 대한 개정 요청
  - 조화제도(HSSC)는 FSI의 상설 의제이므로 FSI 통신작업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회원국들에게 FSI에 이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동 건은 FSI의 검토대로 개정 없이 승인함
- FSI 등에서의 AIS 검사 관련 HSSC에 따른 검사지침 개정안 반영 및 검사를 위한 Test report의 MSC 회람 초안이 완성되었으나, EPIRB 및 VDR 등과 비교했을 때 SOLAS 등과 같은 모법에서의 규정 없이 하위 세부 검사사항이 제정된 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AIS 검사 관련 SOLAS 개정안을 제안
  - FSI 15에서 준비한대로 검사 및 조화제도(HSSC)지침에만 AIS의 세부적인 검사절차를 두기로 하고, AIS 연차 시험 지침을 MSC.1/Circ.1252로 채택함



- 항만국통제관의 활동을 위해 “Code of Good practice”를 MSC-MEPC.4/Circ.2로 승인

**의제 16 인적요인의 역할**

- MEPC 56차(2007. 7. 9~13) 인적요인에 대한 MSC/MEPC 합동작업반의 작업결과와 그에 대한 MEPC의 결정사항을 알리고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함
- MSC 75(2002. 5.)는 2002. 7. 1일 부로 ISM Code 제2차 시행단계(전 선종, 전 세계 선복량의 균형적인 Cover)에 접어든 시점에서 해운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ISM 제도의 명확한 기여를 나타내기 위해 “ISM Code의 선박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”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합의하여 IMO 사무총장은 주관청, 단체, 학계 및 해운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(Group of Independent Experts)을 결성하여 ISM Code의 이행실태, 영향평가 및 효율성을 검토 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, 이에 대한 보고를 함
- 영국은 자동화된 선박시스템에서의 Human error를 줄이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결과를 보고함
- ISM Code는 안전 및 오염방지를 개선하기, 본선에서 부적합사항, 사고 및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토록 하여 이를 조사 및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라이베리아는 ISM Code 시행 이후 Near miss의 보고가 미약한 점을 지적하고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함

- MEPC 56차의 인적요인에 대한 MSC/MEPC Joint working group의 작업결과와 그에 대한 MEPC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 없이 승인함
- 다음의 Circular를 승인함
  - MSC-MEPC.7/Circ.5 : 회사에 의한 ISM Code 이행 지침
  - MSC-MEPC.7/Circ.6 : ISM Code 에 의해 지정된자의 역할을 부여에 필요한 품질,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지침

**의제 17 해상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술지원 하위 프로그램**

- 2006년 및 2007년에 시행된 안전관련 기술협력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
- 표준과정(Model Courses)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로서, MSC 68 및 이후 회기 간에 사무국은 표준과정 프로젝트에 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, 그 경과를 보고함
- 방글라데시 연안 및 내수면에서 운항중인 페리선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
- Abuja MOU의 소개 및 2007~2010년간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
  - Abuja MOU는 1999. 10. 22 설립되었으며 현재 6개국으로 구성됨. 기반구조의 부족으로 PSC활동은 최저 수준임. 이에 따라 행정, 기술 및 운영 부문을 주요 프로젝트로 식별하여 2007~2010년간 시행하기로 함

**의제 18**    **협약 제·개정 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**

- MSC 82에서, 새로운 협약의 제/개정에 따른 이행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, FSI의 작업범위에 관한 강화 및 제/개정 협약의 이행지침서 개발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, 새로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검토를 MSC 83의 잠정의제로 채택하였으며, 회원국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음
- FAL 34, 난파물 제거에 대한 국제회의 및 MEPC 56 결과와 같은 새로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검토에 있어 MSC의 입장을 설명함
- 아국은 난파물 제거 협약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를 홍보하였음
-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으로 선정할 때 평가를 위한 추가의 범주를 제안하고, 새로운 협약 이행에 대한 ad-hoc MSC 역량구축 작업반 설치를 제안하며, 동 문서(MSC 83/18/1) 부록에 첨부된 총회 결의서 제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결정함
  - 새로운 협약 및 개정 시 협약이행 역량 구축을 위한 new criteria 설정하기로 함
  - ad-hoc working group 구성
  - MSC Resolution 채택

**의제 19**    **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행위**

- 지난 1995년 MSC 65는 사무국에게 모든 해적 및 무장강도 사고를 월별, 분기별로 보고

-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보고서임
- 위원회는 MSC 83/19 및 MSC 83/19/1의 제출된 정보를 인지함
- 아시아의 선박 해적 및 무장강도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조 조약
  - 아시아의 선박 해적 및 무장강도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조 조약(Regional Co-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(ReCAAP))에 대한 소개와 ReCAAP의 정보교환센터의 개략에 대한 소개문서로, 2007. 7. 5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ReCAAP 운영이사회회의 특별회의 결과 보고서임
  - 아국은 ReCAAP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,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홍보함

**의제 20**    **일반화물선의 안전**

- 지난 MSC 82에서 러시아(MSC82/21/29)는 MSC 77에서, 일반화물선이 전세계 선복량의 20%를 점유하고 있으며, 선박 전체전손의 42%, 재난이 27%, 높은 PSC 지적율, 34%의 인명 손실률 등 차지하고 있음은 일반화물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반증임을 지적하고, 1999~2004까지의 Lloyd Fairplay 자료를 근거로 상기와 같은 통계를 통해 일반화물선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, 일반화물선에 대한 현재 요건의 적정성을 평가 분석하는 MSC의 새로운 작업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
- 위원회는 현행 요건의 적정성을 평가와 ad-

hoc Working Group 설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MSC 83의 잠정의제로 채택하였으며,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음

- 위원회는 MSC 84에서 특별작업반 구성을 고려하고 동 작업반에서 금번 제출된 자료 및 향후 추가자료(독일, 한국, 기타 국가의 제출자료)를 기초로 일반화물선의 안전기준 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함

**의제 21 공식 안전성 평가 (FSA)**

- MSC 82차 회의 시, FSA Guideline 개선 관련 문서 MSC 82/INF.3(그리스 제출) 내용 중 환경 위험성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MEPC 56차 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하고, 향후 MSC 8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음
- FSA 검토 결과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음
  - FSA 기법은 전략적 Action plan 설정 및 새로운 작업 선정 시 매우 유용하며, 검토 시 유의하여야 할 것임
  - 동 FSA 작업 결과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 유용하게 활용

**의제 22 협약의 이행 및 관련 사항**

- MSC 82의 검토 시간 부족으로 MSC 83으로 이관된 문서의 검토
  - MSC 82/18/1 : IMO의 GISIS에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코드, 권고, 지침 및 안전과 보안관련 비강제 규정들의 신규목록을 위해

회원국에 자료를 요청함

- MSC 82/18/2 - MSC 82/18/4 : SLF의 작업으로 지정함
- MSC 83/22/2, MSC 83/22/3, MSC 83/22/5 : SLF의 작업으로 지정함
- 선박에서의 매뉴얼 사용에 대한 강화(MSC 83/22/4)
  - 선박에서의 매뉴얼 사용에 대한 강화는 ISM으로 가능하나, 육상의 각종 제조자들이 작성하는 매뉴얼은 통제할 방법이 없음.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동 문서로 제출된 초안을 MSC Circular MSC.1/Circ.1253으로 승인함

**의제 23 타 기구와의 관계**

- 타기구와의 관계관련한 이사회의 결과를 모두 승인함
  - INTERFERRY를 상임 자문역으로 변경
  - International Maritime Health Organization (IHMAS)의 임시자문 자격 유지
  -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(IBA) 및 Iberoamerican Institute of Maritime Law(IIDM)에게 자문 승인지침에 만족해 줄 것을 요청
- 아래 기구의 새로운 자문 자격 신청에 대하여 MSC 및 MEPC에 검토를 요청하여 승인함
  - International Paint and Printing Ink(IPPIC)
  -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(IFAW)

- Global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Association(GlobalMET)

#### 의제 24 | 위원회 지침의 적용

- 지난 MSC 82 및 MEPC 55는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작업 지침(Guidelines on the Organization and method of work of the MSC and MEPC and their subsidiary bodies)을 승인한 바 있으며, 이는 2006. 12. 15일자 MSC-MEPC.1/Circ.1로 회람시킴
- 그러나, MEPC 56에서 바하마 대표는 MEPC 작업에서 비현실적인 작업 일정, 계획 등에 있어 상기 지침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함
- 이에 사무국은 이의 해결을 위해 MSC83 회기 중 개최될 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과를 MEPC 57에 알리기로 함
- Meeting group의 수와 관련 다음과 같이 결정함
  - 회기간 작업반(intersessional working group) 및 기술 작업반(technical group)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하지 않기로 함
  - 작업반의 소그룹(splinter group)은 근무시간 외에 작업을 할 것
- information 문서 제출 기한
  - bulky information documents의 제출 기한을 현행 13주에서 9주로 연장함

#### 의제 25 | 작업 계획

- BLG, FP, DSC, NAV, DE, STW, COMSAR, SLF FSI 등의 작업계획을 승인함

#### 의제 26 | 2008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

- 2008년도 MSC 의장 및 부의장 선거
  - 의 장 : 필리핀 IMO담당관인 Mr.Neil Frank R. Feffer 재선출됨
  - 부의장 : 덴마크 해사청의 Chistian Breinholt 선출됨

### IV. 후속조치사항 및 참가조건

- 장거리 선박 추적 시스템(LRIT) 관련
  - 각국의 LRIT 추진 관련
    - 유럽은 29개 국가가 참여하는 RDC 구축을 추진 중이며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LRIT RDC가 될 것으로 사료됨
    - 미국, 러시아,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인지 정하지 못한 상황임
    - LRIT 관련 각국의 주요 관심은 비용과 데이터의 보안성에 있음.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, 데이터의 보안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IDC/CDC/RDC 가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음
  - 대응 관련
    - LRIT 관련 작업반 회의가 그동안 5차례

개최되었으며, 회기간 회의가 1회 개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회기간 회의 1회만 참석하였음. 그동안의 작업반 회의 논의 경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적극적인 회의 대응에 한계를 느낌

- 주요 사안이 작업반 회의를 통하여 검토되기 때문에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작업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요망됨

□ **신개념 선박구조기준(GBS) 관련**

○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적용할 신개념 선박구조기준(GBS) 완성에 조선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적극적

인 기여가 요망됨

○ 향후 장기 작업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는 GBS 통신작업반에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익을 보호할 필요 있음

□ **신개념 선박구조기준(GBS) 관련**

○ 현재 협약비적용 선박에 대한 자발적 해상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이 통신작업반에 의하여 준비중에 있고 2008년 MSC 85에서 승인 예정이므로 통신작업반에서의 작업 진행사항을 주시하여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